

300-2-092. 신문조서(尹德柄 외 4명, 金恩國 외 4명 大正 8년 制令 제7호 위반)

■ 金料全 외 4인과 金恩國 외 4인의 1919년 制令7號 위반사건 기록 수록

- 尹德柄·金料全·鄭雲鮮·金演義·朴一秉 등은 1928년 2월 13일 제1심판결이 있었고,控訴를 2월 25일에 제기했다. 鄭雲海는 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3년, 金料全은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260일 통산, 尹德柄은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160일 통산, 鄭泰重·李忠模·李承燁·趙東嫻 등은 징역 1년의 선고가 있었다.
- 權五高 외 94인의 判決등본 下付願이 변호인 鄭求瑛 등에 의해 제출되었고, 回答이 있었다. 그 후 구류기간 갱신결정이 있었고, 李升雨·鄭求瑛 변호사의 선정계가 제출되었다.
- 1928년 5월 18일 鄭雲海, 21일 金料全의 上訴取下書가 제출되었고, 6월 20일 尹德柄, 7월 11일 金演義, 13일 朴一秉의 上訴取下書 제출로 控訴完結이 7월 16일에 決定되었다. 朝鮮共產黨사건 관련 일람표(一審·覆審의 事件번호, 押收번호, 人名, 비고 등)가 작성·기록되어 있다(103쪽)
- 張順明의 治安維持法 위반사건 判決은 징역 2년 6월, 구류일수 330일 통산이 선고되었고, 上告訴訟은 1928년 2월 14일에 접수되었으나 3월 2일 上告取下書 제출로 刑이 確定되었다.
- 朱鍾建 외 2명의 治安維持法 위반사건은 1934년 7월 27일에 召喚狀이 발부되었고, 戶籍照會 回報기록이 있다.
- 朴憲永(正楊)은 1934년 12월 27일에 懲役 6년에 처하고 미결구류일수 중 550일을 算入한다고 判決, 선고하였다. 朴憲永은 京城公立第一高等普通學校를 卒業 후 東京에 2~4개월 동안 체재하다 上海로 도향하여 中國人이 운영하는 商科大學에 在學하던 중 金萬謙이 조직한 社會主義연구소에서 研究하며 공산주의에 몰두하였고, 1921년 金萬謙의 지령으로 조선 내에서 공산주의 실천운동을 기도하여 金丹治·林元根과 共謀하다가 安東縣에서 活動中 逮捕되어 1922년 10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1919년 4월 制令7號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의 선고로 복역 후, 東亞日報 記者로 근무중 1924년 8월부터 동지를 규합하고 1925년 4월 18일 權五高·林元根·曹奉岩 외 13명과 會合하여 高麗共產青年會를 조직, 전형위원으로 활약하였고, 露國 모스크바 국제공산청년회와 연락을 취하며 會員 모집 등으로 공산주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공산학교에 安相勳 등 10여명의 유학생을 파견 하는 등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약하였다.
- 그 후 1925년 結社 발견시 체포되어 豫審經由 京城地方法院의 公判 계류중 保釋 되었으나, 1928년 8월 妻 朱世竹을 同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29년 4월까지 체류하다가 동월 말경 모스크바에 이르러 모폴의 후원으로 공산주의 이론 연구를 위하여 모스크바 마르크스학원 예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病 재발 등으로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同地 新韓村 朝鮮人一級學校에서 교편을 잡으며 露語修學을 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1932년 12월 20일 上海 佛租界에서 金丹治와 會見 후 出版物 등을 조선 내에 이송·배포하여 공산당 결성을 위한 준비공작을 해 왔다. 朴憲永은 舊治安유지법(1925년 4월 22일 法 46號) 1조 1항, 新治安유지법(1928년 6월 29일 勅令 129號)의 1조 1항 前段 2항 2조에 저촉되고 刑法 54조 1항 前段 10조에 의하여 45조 前段의 併合罪에 해당되어 47조 10조·14조를 적용하여 1934년 12월 27일 징역 6년, 미결구류일수 550일 통산의 判決이 있었다.
- 金恩國 외 4인 사건은 1921년 3월 9일 경성지방법원의 不起訴사건 기록이다. 韓春福은 1920년 8월 晋州郡에서 赤十字規則 1枚 외 의연금 영수증 22매를 受取하여 파기하였고,

1915년 柳章浩를 면담하고 불온문서의 일람을 요청하였으나 授受 하지 못하였고, 李敏台는 鄭瑞雄으로부터 金起漢이 作成한 朝鮮獨立에 관한 불온 문서를 受取한 바 있으나 一部를 소각하고 나머지를 金恩國에 주어 파기시켰다. 金恩國은 柳章漢에게 소각하도록 시켰으나, 一部는 자택에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정치개혁 목적의 행동이다.

- 이 사건은 1921년 1월 28일 保安法 위반으로 검사국에 수리되었으나, 1921년 10월 2일 불기소처분으로 放免되었다. 계속적으로 주의인물 동향보고가 있었으며, 그 동안의 조서 기록으로 柳章浩의 調書는 1921년 1월 28일, 李敏台는 1월 29일, 金恩國은 1월 3일에 작성되었다. 李敏台 외 3인의 證人 신문조사는 2월 2일에 있었고, 鄭瑞雄의 조서작성은 2월 2일, 韓春福의 조서작성은 2월 3일에 있었다. 鄭敏台·金恩國의 2회 신문조사는 2월 3일에 있었고, 柳章浩·韓春福의 2회 신문조사는 2월 4일에 작성되었다. 崔文亨·金起漢 조서는 2월 4일에 작성되었다. 崔文亨·柳章浩·李敏台·金恩國·韓春福 등의 保安法 위반 피고사건은 2월 5일, 17일에 석방결정이 각각 있었다. 그 후 訊問調書作製囑託件 照會가 있었고, 安俊의 증인 신문조사는 2월 12일에 있었다.
- 各人の 身元照會와 意見書記錄이 있다.